

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. 5. 22 선고 2024가단51872 판결 [보증채무금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, C

피 고 D

변 론 종 결 2024. 4. 24.

판 결 선 고 2024. 5. 22.

주 문

- 피고는 원고에게 17,474,407원 및 그중 16,254,100원에 대하여 2024. 3. 26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-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(다만, ‘채권자’는 ‘원고’로, ‘채무자’는 ‘피고’로 본다).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박남진

별지